

제391회국회
(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제 4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1년11월30일(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의안번호 2112422)
2. 2022년도에 발행하는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의안번호 2112423)
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407)
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227)
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909)
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955)
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735)
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009)
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215)
1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311)
1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119)
1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940)
1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778)
1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443)
1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655)
1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251)
1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16)
1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565)
2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83)
2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206)
2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499)
2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465)
2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401)
2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04)
2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60)
2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074)
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361)
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077)
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127)

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370)
3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62)
3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407)
3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701)
3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32)
3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402)
4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038)
4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362)
4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402)
4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536)
4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677)
4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945)
4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807)
4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153)
4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471)
5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588)
5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175)
5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390)
5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11)
5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93)
5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953)
5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314)
5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393)
5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431)
5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62)
6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287)
6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490)
6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96)
6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589)
6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163)
6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583)
6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369)
6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230)
6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396)
7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408)
72.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294)
73.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410)
74.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5.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662)
76.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405)

77.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8.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86)
79.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395)
80.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074)
81.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404)
82.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398)
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073)
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091)
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460)
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385)
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011)
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869)
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457)
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877)
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927)
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192)
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837)
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028)
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148)
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150)
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552)
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594)
1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599)
1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653)
1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881)
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992)
1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023)
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071)
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131)
1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167)
1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245)
1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362)
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405)
1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449)
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468)
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503)
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505)
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509)
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584)
1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652)
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675)
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794)
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941)

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960)
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084)
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111)
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133)
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141)
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174)
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178)
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219)
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393)
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409)
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435)
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487)
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683)
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750)
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910)
1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973)
1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077)
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376)
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378)
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546)
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565)
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729)
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772)
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29)
1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101)
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124)
1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145)
1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281)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339)
1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385)
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406)
1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532)
1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538)
1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561)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598)
1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599)
1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605)
1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636)
1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648)
1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694)
1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715)
1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729)
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755)
1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759)

1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773)
1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776)
1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47)
1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50)
1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932)
1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944)
1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946)
1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965)
1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7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344)
17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177)
17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352)
17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056)
17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409)
17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80.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399)
181.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852)
182.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394)
183.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83)
184.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85.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411)

상정된 안건

1. 2022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의안번호 2112422) 9
2. 2022년도에 발행하는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의안번호 2112423) 9
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4407) 10
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27) 10
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09) 10
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55) 10
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35) 10
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09) 10
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15) 10
1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11) 10
1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
1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119) 10
1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940) 10
1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78) 10
1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43) 10
1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55) 10
1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51) 10
1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316) 10
1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65) 10
2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83) 10

2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06)	10
2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99)	10
2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
2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65)	10
2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01)	11
2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04)	11
2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60)	11
2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
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74)	11
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61)	11
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77)	11
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27)	11
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70)	11
3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62)	11
3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07)	11
3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01)	11
3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32)	11
3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
3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02)	11
4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38)	11
4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
4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362)	11
4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02)	11
4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36)	11
4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77)	11
4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45)	11
4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07)	11
4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53)	11
4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71)	11
5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88)	11
5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75)	11
5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90)	11
5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11)	11
5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93)	11
5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53)	11
5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14)	11
5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393)	11
5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31)	11
5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62)	11
6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
6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287)	11
6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490)	11
6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96)	11
6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89)	11

6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63)	11
6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83)	11
6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69)	11
6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30)	11
6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396)	11
7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
7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08)	11
72.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94)	11
73.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10)	12
74.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
75.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62)	12
76.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05)	12
77.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
78.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86)	12
79.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395)	12
80.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74)	12
81.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04)	12
82.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
8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398)	12
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73)	12
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91)	12
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60)	12
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85)	12
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11)	12
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869)	12
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57)	12
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77)	12
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27)	12
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92)	12
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37)	12
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28)	12
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48)	12
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50)	12
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52)	12
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94)	12
1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99)	12
1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53)	12
1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81)	12
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92)	12
1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23)	12
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71)	12
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31)	12
1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67)	12
1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45)	12

1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62)	12
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05)	12
1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49)	12
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68)	12
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03)	12
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05)	12
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09)	12
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84)	12
1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52)	12
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75)	12
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94)	13
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41)	13
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60)	13
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84)	13
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11)	13
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33)	13
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41)	13
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74)	13
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78)	13
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19)	13
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93)	13
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09)	13
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35)	13
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87)	13
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83)	13
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50)	13
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10)	13
1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73)	13
1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77)	13
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76)	13
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78)	13
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46)	13
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65)	13
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29)	13
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72)	13
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29)	13
1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01)	13
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24)	13
1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45)	13
1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81)	13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39)	13
1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85)	13
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06)	13
1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32)	13

1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38)	13
1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61)	13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98)	13
1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99)	13
1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05)	13
1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36)	13
1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48)	13
1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94)	13
1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15)	13
1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29)	13
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55)	13
1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59)	14
1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73)	14
1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76)	14
1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47)	14
1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50)	14
1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32)	14
1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44)	14
1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46)	14
1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65)	14
1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
17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44)	14
17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77)	14
17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52)	14
17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56)	14
17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09)	14
17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
180.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399) ..	14
181.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52)	14
182.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394)	14
183.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83)	14
184.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
185.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11)	14

(14시19분 개의)

○위원장 윤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먼저 2건의 국가보증동의안부터 의결하고 이어 경제재정소위원회와 조세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2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의안번호 2112422)

2. 2022년도에 발행하는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의안번호 2112423)

(14시20분)

○위원장 윤후덕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에 발행하는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정일영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정일영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정일영 위원장입니다.

2022년도에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2건에 대하여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대출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1조 3000억 원 이내의 채권에 대한 원리금을 국가가 보증하려는 것으로 정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으며, 금리 상승 시 학자금 상환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되지 않도록 기획재정부는 주무부처와 협의하여 대출금리를 가능한 낮게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한국산업은행이 기간산업 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발행하는 10조 원 이내의 채권에 대한 원리금을 국가가 보증하려는 것으로 정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후덕 정일영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 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에 발행하는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법률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4407)
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27)
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09)
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55)
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35)
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09)
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15)
1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11)
1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119)
1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940)
1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78)
1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43)
1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55)
1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51)
1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316)
1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65)
2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83)
2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06)
2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99)
2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65)

2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01)
2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04)
2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60)
2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74)
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61)
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77)
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27)
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70)
3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62)
3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07)
3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01)
3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32)
3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02)
4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38)
4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362)
4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02)
4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36)
4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77)
4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45)
4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07)
4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53)
4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71)
5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88)
5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75)
5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90)
5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11)
5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93)
5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53)
5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14)
5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393)
5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31)
5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62)
6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287)
6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490)
6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96)
6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89)
6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63)
6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83)
6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69)
6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30)
6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396)
7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08)
72.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94)
73.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10)
74.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75.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62)
76.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05)
77.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8.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86)
79.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395)
80.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74)
81.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04)
82.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398)
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73)
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91)
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60)
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85)
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11)
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869)
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57)
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77)
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27)
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92)
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37)
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28)
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48)
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50)
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52)
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94)
1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99)
1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53)
1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81)
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92)
1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23)
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71)
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31)
1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67)
1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45)
1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62)
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05)
1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49)
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68)
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03)
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05)
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09)
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84)
1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52)
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75)
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94)
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41)
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60)
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84)
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11)
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33)
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41)
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74)
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78)
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19)
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93)
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09)
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35)
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87)
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83)
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50)
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10)
1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73)
1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77)
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76)
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78)
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46)
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65)
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29)
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72)
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29)
1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01)
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24)
1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45)
1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81)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39)
1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85)
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06)
1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32)
1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38)
1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61)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98)
1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99)
1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05)
1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36)
1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48)
1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94)
1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15)
1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29)
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55)

1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59)

1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73)

1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76)

1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47)

1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50)

1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32)

1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44)

1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46)

1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65)

1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7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44)

17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77)

17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52)

17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56)

17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09)

17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80.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399)

181.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52)

182.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394)

183.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83)

184.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85.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11)

(14시23분)

○위원장 윤후덕 의사일정 제3항 국가재정법 일

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85항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8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류성걸 경제재정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경제재정소위원회 류성걸 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11월 16일부터 25일까지 네 차례 회의를 열어 7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도 깊은 심사를 진행한 결과 위원회 대안 2건, 대안반영폐기 19건을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이소영 의원, 권인숙 의원, 김주영 의원, 유의동 의원, 권명호 의원, 이수진 의원, 김성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8건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체계적인 성과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며 성인지예산 제도와 성별영향평가 간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예산의 재배정 업무를 한국재정정보원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또한 본 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서 2022년 1월 1일부터 설치·운용될 기후대응기금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성호 의원, 고용진 의원, 서삼석 의원, 소병철 의원, 송옥주 의원, 이학영 의원, 임이자 의원, 임호선 의원, 최인호 의원, 황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11건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국유재산 특례의 기본 원칙을 신설·구체화하고 국유재산 특례 점검·평가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며 각 특례조치별 존속기한을 별표에 명시하도록 규정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2023년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조직위원회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감면 등 9개 신설 특례조치를 별표에 추가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상 법률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진 조세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조세소위원회 김영진 위원장입니다.

조세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세소위원회는 이번에 일곱 차례 회의를 열어 240건의 세법 개정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개별소비세법 등 4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으로, 국세기본법 등 11건의 법률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농어촌특별세법 등 2건의 법률안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한도를 현행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하고 통계자료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에 국회의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기를 2023년 1월 1일부터로 1년 유예하는 한편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50% 한도 기부금 단체에 추가하는 한편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불성실 제출한 경우에 대한 가산세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기준을 현행 연매출 3000억 원 미만에서 400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영농상속공제 한도액을 현행 15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하였으며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미술품을 물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부가가치세액의 지방소비세 전환 비율을 2022년에는 23.7%, 2023년부터는 25.3%로 인상하고 예정고지·예정부과의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영세사업자의 범위를 납부할 세액 30만 원 미만에서 50만 원 미만인 경우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개인의 소액 해외직구 물품의 반품 시 관세환급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민간 항공기 협정 대상 물품에 한정하여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대안은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재원으로 하

는 특별회계와 기금의 재원 마련을 위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통관 업무를 소개·알선받는 행위와 관세사 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류 제조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생맥주에 대한 세율경감 특례기한을 2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국가 안보·경제에 중요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에 대하여 2024년 말까지 현행 신성장·원천기술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한편 2019년 말 개정된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한 현물 출자 시 과세특례의 유예기간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2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조세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후덕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있는 법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소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혜영 위원님 말씀 주시고 김수홍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장혜영 위원 홍남기 부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올라온 가상자산 과세 유예 안에 대해서 이게 민생 개혁 법안이다 이런 얘기가 일각에서 있는데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 부총리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저는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서는 지난해에 국회에서 결정해 주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과세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혜영 위원 여당에서 지속적으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안 됐다고 얘기를 하고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는 이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왔다고 강조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정부의 인프라 구축에 대한 입장 분명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정부는 지난해에 국회에서 과세를 결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동안 인프라 구축 작업을 해 왔고요. 사실 내년에 과세가 되더라도 차질이 없게끔 인프라는 구축이 돼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장혜영 위원 대주주 주식 양도세 과세 요건 강화하는 것도 결국에는 2023년으로 미뤘고 이렇게 가상자산 과세도 꾸준히 준비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명분 없이 자꾸 이렇게 미루게 되면, 그렇게 해서 2023년에 금융투자소득 과세하고 한꺼번에 다 시행을 하게 되면 제가 정말 걱정되는 것은 그때는 반발이 없겠나라고 하는 점이에요. 명확한 명분 없이 이렇게 조세의 원칙을 뒤흔들었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는 그때에도 미루자고 하고, 그때에는 미루지 않을 명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이제까지의 사례로 보면 그 당시에, 2023년에도 여러 가지 이슈가 제기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부터 과세가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법 개정 문제는 국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여야가 이와 같이 의사결정을 한다면, 만약 그래서 확정이 된다면 정부로서는 어쩔 수 없이 입법을 받아들이고 이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정부가 이와 같은 과세에 대한 유예에 대해서는 소망스럽지 않다는 입장을 소위 때 몇 차례 말씀드렸다는 얘기를 제가 밝히고자 합니다.

○장혜영 위원 저는 특히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뚜렷한 이유 없이 조세 정의, 조세 원칙을 다 무너뜨리는 전례를 남긴다는 점에 대해서 이번 법안에 대해서 매우 큰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이어서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지난 6월에 시세 13억에 해당하는 고가 주택 재산세를 낮춰 줬고요. 8월에는 시세 16억에 해당하는 고가 주택 중부세를 면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양도세까지 시세 9억에서 12억으로 완화하는 법안이 올라왔는데요. 1세대 1주택에 대한 보유세하고 양도

세를 모두 완화하면 1주택자가 집 팔고 무주택자가 되지 않는 한 고가 주택으로 수요 자체가 이동해서 오히려 안 그래도 불안한 주택시장의 불안을 더더욱 가중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위원님, 이번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의 공제금액 조정과 관련해서는요, 사실 주택 가격이 그동안 여러 변동이 있었고 해서 공제금액의 기준을 조정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정부로서는 지금 부동산 시장이 매우 불안정하다가 최근에 안정세로 이렇게 돌아서면서 그런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이번에 양도소득세의 공제금액 기준 조정이 부동산 시장 불안 심리를 혹시 자극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가 돼서 공제금액 기준 조정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좀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소위 때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혜영 위원 저는 부총리님의 우려가 매우 합리적인 우려라고 생각하고요.

1가구 1주택자가 5년 전에 6억 원에 산 집에 거주하지는 않고 이것을 12억에 매도해서 6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을 때 원래대로라면 내야 될 세금이 대략 얼마인지 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그것은 아마 지금은 9억이 공제금액이기 때문에 거기서 9억을 빼고요, 나머지 차액 3억에 대해서 과표가 적용돼 가지고 해서…… 제가 정확히 양도세가 얼마인지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만 만약 12억으로 조정이 되게 되면 저는 부동산 시장에서 9억에서 12억 구간, 양도소득세가 없어지는 구간의 주택에 대한 수요라든가 공급,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조금 우려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혜영 위원 맞습니다. 원래대로라면 3000만원이 넘는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요. 6억 원의 시세차익이 있어도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제가 여쭙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연봉 수천만원 받는 근로소득자들에게 대해서는 철저하게 과세하면서 이렇게 주택을 양도해서 생긴 수억 원에 대해서는 과세를 안 하는 것이 과연 과세 정의에 부합하는 일인지 여쭙보고 싶고, 이러면서 한편에서 자산 불평등이 문제다, 청년들의 자산 격차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양심 있는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부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제가, 재정을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사실은 공평과세, 형평 과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가 늘 국회의원님들께서 질문 주실 때 저희의 기준은 세수를 많이 확보하나 적게 확보하나 이 기준보다도 과세의 형평과 공평을 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 크기 때문에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측면이 저는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이런 법으로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입법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부 입장은 말씀을 드리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적으로는 국회에서 입법권으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아마 고려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장혜영 위원 저는 오늘 입법을 통해서 우리 국회가 과세 불평등을 입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매우 큰 유감을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세법 개정안에서 반도체, 2차전지,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 조세지출의 혜택은 사실 대부분 대기업이 보게 돼 있는데요. 이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기업들의 올해 3분기 영업 이익을 보면 반도체 산업에서만 삼성은 올 3분기까지 37조 이상, SK하이닉스는 7조, 2차전지 LG화학도 3조 이상의 영업 이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들 3개 업체만 따져도 올해 영업 이익이 48조 인데요. 이들에 대해서 향후에 5년 동안 감세하는 금액이 누적법으로 4조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런 감세를 통해서 얼마큼의 기대 효과가 발생하는지는 정확하게 추산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대의견에 제가 남기고 싶은데요. 정부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감세를 통해서 향후 5년 동안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연구용역을 이제라도 해서 국회에 제출했으면 좋겠고요. 이것을 예상할 수 없는, 명확하게 예상할 수 없는 현재 시점에서 저는 이번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반대 입장을 남기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후덕 김수홍 위원님 말씀 주시고 김영진 위원님 말씀 주시고 용혜인 위원님 말씀 주시고 류성걸 위원님 말씀 주시고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주십시오.

○김수홍 위원 방금 전에 류성걸 경제재정소위원장이 보고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한 내용인데요. 그 내용에 보시면 예산의 재배정 업무를 한국재정정보원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국가재정법 제43조의2를 보면 중앙관서의장이 재무관으로 하여금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때에는 재무관별로 세출예산재배정계획서를 작성하고 재배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들어 보니까 한국재정정보원은 예산의 편성이나 집행 기관이 아닌데 재배정 업무를 재정정보원에 대행할 수 있도록 한 게, 이것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는데 조금 재정 체계상 가능할지에 대해서 한번 여쭙보고자 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위원님, 아마 재배정계획서 작성 관계를 한국재정정보원에 위탁하는 문제 말씀 주시는 것이지요?

○김수홍 위원 아니요, 재배정을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재정정보원법에 따른 한국재정정보원에 재배정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재정정보원이 예산의 집행기관도 아니고 편성기관도 아닌데 이렇게 대행하게 해도 문제가 없는지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위원님, 제가 이것은 금방 다시 실무 의견을 받아서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홍 위원 예.

○위원장 윤후덕 김수홍 위원님, 그러면 답변을 나중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김영진 위원 조세소위 위원장으로서 논의된 부분에 관해서 아까 제안설명을 했는데 약간 추가해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기를 1년 연장한 것은 여야 후보의 무슨 유불리나 이런 부분을 다 떠나서 올해 중반기 이후부터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방침이 나온 이후 시장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조치들 그리고 4개 거래소에 대한 점검 그리고 가상자산의 거래 현황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제반의 문제점들을 현장을 통해서 확인해 본 바 전체 거래금액이 코스피 수준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과세 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설정 그리고 의제

가액에 대한 결정과 그를 통한 양도차익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설정돼 있지 않고 A·B·C·D 거래소 간의 이전에 대해서 A 거래소에서 계속 거래를 하면 문제가 없지만 A에서 B, A에서 C, A에서 D가 거래한 문제를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시스템적인 문제 그리고 과세 대상자들이 가지고 있는 과세 형평성과 수용의 문제, 여타 문제와 시스템적인 구축을 국제청이 제대로 준비하고 과세 당국이 준비해 나가면서 진행하는 것이 추후 이 제도가 도입됐을 시에 안정적으로 가는 데 더 유효하다는 판단이 많았고 이 법안 법률안에 대해서 기재위원들 많은 분들이 발의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기재 조세소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해서 1년을 유예하고.

또 정부위에서 현재 얘기하고 있는, 가상자산에 대한 업권법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이 설정이 되면, 그와 이 과세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나가게 되면 사회적으로 충분히 합의해 나가면서 과세를 하더라도 과세 반발이나 여러 가지 현장 집행에 있어서의 더 유효한 부분들이 이후 수십 년간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하에 1년 유예를 해서 준비하자는 취지로 연장안에 합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관련해서도, 종부세 관련해서도 실제로 적용을 해 보았더니 사실은 전체 대상자의 대략 2% 정도가 종부세 대상자로 한정돼 있어서 9억에서 12억으로 완화했을 시에 마치 그것이 세금을 면제해 주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공시가격 인상으로 오는 시장의 반응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결과였고, 이번 양도소득세를 9억에서 12억으로 조정할 것도 2008년 이후 그동안 조정되지 않았던 부분들에 관해서 공시가격과 시장가격을 반영해서 부동산 시장의 합리적인 흐름에 부응해서 조정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시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 의원님들이 발의를 많이 해 주셔서 조세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후덕 다음 용혜인 위원님 말씀 주시고 류성걸 위원님 말씀 주시고 그리고 양향자 위원님 말씀 주시고, 그렇게 하고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혜인 위원 부총리님, 어쨌든 현장에서, 과세 당국에서 가상자산 과세 관련해서 과세하는 데

문제가 없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전에 김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위원님, 저희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과세를 할 때도 일부 과세 기반이 좀 미흡해서 사실 추정해서 한단거나 또는 약간 미흡한 분야도 없지 않습니다.

가상자산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곳에서 또는 해외에서 이렇게 됐을 때 확인이 안 돼서 의제한다든가 본인의 신고에 의존한다든가 하는 경우로 과세가 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것을 모든 것을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다 잡아서 과세 한다면 정말 몇 년 뒤에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선진국도 다 그렇게 파악된 범위 내에서 과세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아마 김영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은 조금 더 철저하게, 완벽하게 된 다음에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측면에 대한 지적이 아닌가 싶고요. 전체적으로는 저희는 가상자산을 과세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인프라는 갖췄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용혜인 위원 가상자산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과세를 하고 있고 그렇게 시작할 수도 있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정부의 입장이신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예.

○용혜인 위원 이게 어제 소위에서 논의가 됐는데요. 아까 부총리님께서 계속해서 이 심사 과정에서 정부에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장혜영 위원님께 답변을 하셨는데 어제 최종적으로 소위에서 심사가 끝이 났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 안은 정부가 끝까지 부동의한 것이고 다만 국회에서 결정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여야 간사 간의 합의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예, 저희는 정부의 입장을 그렇게 누차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이 법안은 정부가 반대 의견이 있더라도 국회에서 최종 입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 입법적으로 국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고 입법이 되면 행정부는 일단 성립된 법안에 대해서 집행하는 것은 행정부의 임무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그런 의사결정이 된다면 저희야 확정된

법대로 집행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혜인 위원** 저는 코스피 수준에 육박하는데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지금 현 상황이 더 문제시 되는 것 같고요. 이것이 유불리를 떠나서의 문제 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아까 수용의 문제가 나왔는데 이 부분이 사실 국회에서 그 어느 문제보다도 유불리를 따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작년에 이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킬 때와 지금의 상황이 달라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계속해서 과세를 시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에 대한 답변이 없이 계속해서 수용의 문제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건 결국에는 이것에 대한 유불리를 따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중부세 이야기도 나왔는데 이게 사실 같은 논리라면, 근로소득자들이 연봉이 올라서 세 부담이 늘어나니까 세금을 완화해 줘야 되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다들 생각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난히 부동산에 있어서만 큼은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이 늘어나서 그 부담분을 감경해 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는데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분명히 당사자가 소유한 자산가치가 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자산가격이 올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것이 다분히 의도적 외면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어제 조세소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표결을 했었는데요. 표결 과정도 사실 굉장히 문제적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표결 절차도 아니었고 대략 의견을 확인하는 방식으로만 넘어간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저는 유감을 표하고 싶고요.

어쨌든 국회에서 작년에 통과시켰던 법을 뚜렷한 명분도 없이 이렇게 후퇴시키는 것 그리고 중부세 완화와 함께 양도세까지 완화시키는 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국회에서 다시 한번 상반된 시그널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한 명의 국회의원으로서 굉장히 부끄럽고 처참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고려해 주셔서 오늘 표결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후덕** 류성걸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류성걸 위원** 부총리께 여쭙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법안을 발효, 그러니까 공포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 어떤 기준을 정해서 특별하게 시행일을 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안건 중에서 양도소득세의 경우에—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하고 제4호입니다—그 관련해서 양도소득세가 지금 현재 비과세 금액 기준으로 따지면 9억에서 12억으로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안에서는 내년 1월 1일로 돼 있는데 이것을 공포와 즉시 시행했을 때 특별하게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준비기간이라든지? 이건 세부적인 사항이니까 답변저것 하시면 세제실장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아마 위원장님께서도 회의 시작 전에 저희한테 실무 문의를 주셔서 저희가 답변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것은 특정 시점부터 발효하도록 할 것인지, 공포일로부터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법 시행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저희가 할 수는 있고요.

다만 법이 넘어오면 공포일까지는 저희가 보건대 최소 2주, 길게는 한 3주 정도가 소요돼서 아마 공포일이라 하더라도 한 3주 정도는 소요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정 시점을 잡나 공포일로 하나 그것은 시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류성걸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제안드립니다.

이 관련해서 조금 전에 부총리 말씀대로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나 또 특별하게 날짜를 정해서…… 지금 내년 1월 1일로 되어 있는데 그 차이가 결국은 금년도 내나 내년도부터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사항의 시행에 있어서 특별하게 준비 사항이 없고 차이가 없다면 공포일로부터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진 위원** 공포일로부터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후덕** 그러면 동의를 있었으므로 이 안건에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해도 되겠습니까?

○**김영진 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후덕 그러면 행정실, 이것 자구를 수정해야 되지 않아요?

위원님들 의견이 그러시다면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고, 의결할 때까지 그렇게 수정해 놓겠습니다.

양향자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양향자 위원 부총리님,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기를 유예해야 되지 않느냐를 제가 거의 가장 먼저 제기했던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 같고요. 그런데 그것을 얘기하시는 것보다는……

제가 그때 문제점으로 말씀드렸던 것은 과연 손익 계산에 따른 과세 합리화가 되어 있느냐 그리고 시스템 구축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라는 말씀, 그것은 일반적 투자자로부터의 과세 저항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부총리님 말씀이 국회에서 법안으로 진행을 하면 정부는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계속하시어……

저는 2023년 1월 1일부터 1년 유예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1년 동안에 더 이상 이런 얘기가 안 나오려면 이런 정성적 분석자료가 아니라 체크리스트라도 해서 우리가 이 정도 하면 더 이상 과세 시기를 유예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뭔가 설명이 되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는 보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2023년도 1월 1일부터라도 하려면 ‘국회에서 이렇게 했으니 우리 정부는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안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분명하게 소득 있는 곳에 과세를 하려면 이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리스트 업을 하고 이게 해결이 어디까지 됐는지, 정말 해도 되는지 이것에 대한 명확한 어떤 근거와 논거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오히려 저는 이미 정부는 과세를 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졌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님께서 이러이러한 게 미흡하지 않느냐고 지적하면 답변드릴 수 있어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세할 수 있는 시점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후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위원장님, 아까 김수홍 위원님이 주신 것에 제가 답변을 안 드렸는데요 잠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후덕 예, 답변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아까 위원님께서 국가재정법에 배정된 세출예산을 재배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한국재정정보원이 대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여쭙습니다.

이 건은 국가재정법에 이미 배정된 세출예산 범위 내에서 세출예산을 재배정하는 문제고요. 재배정은 디브레인에서 재배정 작업을 버튼을 누른다든가 액션을 취하는 것인데요. 이게 배정된 세출예산 범위 내에서 재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디브레인을 운영하는 한국재정정보원이 실질적으로 대행을 해 왔습니다.

이것 대행을 하지 않고 모든 부처가 할 때 담당자가 휴가를 갔다든가 했을 때 제때 배정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편의상 한국재정정보원이 그 범위 내에서 재배정을 해 왔던 것인데요. 작년에 국회 기재위 국감에서 법적 근거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하려면 근거를 갖춰라 해서 이번에 국가재정법에 관련 내용을 확실하게 하는 근거법이 추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입법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동의를 한 것이고요, 이게 어떤 판단을 하는 것보다도 세출예산이 배정된 범위에서 재배정하는, 인력에 의한 단순 절차이기 때문에 재정의 조기 집행, 아주 확실한 집행을 위해서 이런 대행은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입법적으로 이번에 들어갔고 저희가 동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윤후덕 설명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먼저 오늘 의결할 법률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비용추계서 첨부 생략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58조제5항, 제66조제3항 및 제79조의2제3항에 따라 축조심사 및 비용추계서 첨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0항까지 이상 8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1항 국가재정법 일부개

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부터 22항까지 이상 11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3항 국유재산특별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27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8항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9항부터 제37항까지 이상 9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8항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결하면서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장혜영 위원 이의 있습니다.

○용혜인 위원 표결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후덕 용혜인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용혜인 위원 해당 법안에 대해서 표결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장혜영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윤후덕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 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표결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위원 총 14인 중 찬성 12인, 반대 2인으로 의사일정 제38항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사항에 방금 논의된 사항을 추가한 내용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9항 및 제40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1항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42항부터 제59항까지 이상 18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60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면서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1항부터 제69항까지 이상 9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70항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1항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2항 및 제73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74항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5항 및 제76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77항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8항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9항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0항 및 81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82항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3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4항부터 제172항까지 이상 89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73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면서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4항부터 제178항까지 이상 5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79항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면서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0항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1항부터 제183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84항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5항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많은 건수의 법률안을 의결하였으므로 의결한 안건을 추후에 정확히 확인하고 체계 및 구조를 수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된 국가보증동의안 및 법안과 관련하여 정부 측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윤후덕 인사말씀 듣고 의사진행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존경하는 윤후덕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2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 등 2건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9건에 대한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귀한 지적과 고견에 대해서는 정부가 앞으로 법 집행은 물론 정책의 수립·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한 가지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재정준칙 도입을 규정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도 기재위에서 조속히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후덕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마쳐야 하는데 김주영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말씀 주십시오.

○김주영 위원 오늘 185건의 법안을 심사한 결과를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법안들 그리고 이해 당사자들이 처리가 되기를 원하는 법안들이 아직도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최근에 ESG 경영이 화두입니다. 본 위원도 공운법 일부개정안을 작년 11월 달에 대표발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금년도에 선진국에 편입된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경제포럼에서도 ESG 경영의 4개 축은 거버넌스·지구·사람·번영이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거버넌스가 으뜸이라고 정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기업들이 ESG 경영을 화두로 올리고 있는데 정부의 공공기관, 정부에서 공운법에 의해서 직접 지배·개입을 하고 있는 정부 공공기관들은 아직도 거버넌스에 관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선진국에서 노동이사제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와 가까운 대만 같은 경우에는 벌써 20년 전부터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상임위에서 하루빨리 논의들을 진행하고 또 지금 우리가 소위를 구성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많은 법안들을 다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매일이라도 회의를 열어서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후덕 양경숙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숙 위원 김주영 위원님의 노동이사제 도입 관련한 조속한 법률안 처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제가 경제재정소위 위원인데, 노동이사제 도입에 관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20년 11월 16일에 경제재정소위에 상정돼서 심도 있게 토론이 되었습니다. 1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재상정을 하고 있지 않고 재상정되지 못했습니다. 토론

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의결도 되지 못한 것이지요. 이러한 경제재정소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 같은 소위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도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고요, 특히 경제재정소위 위원장님께서도 노동이사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는 의견을 피력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 넘도록 다시 진즉에 다뤄야 됴에도 불구하고 다루고 있지 않다라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야 간사 간에 보다 더 충분하게 더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셔서, 이 법안이 지금 상정 안건으로는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다루어지려면 아직도 요원합니다. 왜 우선적으로 다루도록 여야 합의를 1년 이상 이뤄 내지 못하고 있는지 답답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이나 이사회 대표성, 책임성, 직원 권익 보호가 필요하고요. 해외 여러 국가에서도 이미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 공공 부문 노동자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우리 정부가 이미 100대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약속까지 했습니다.

유럽에서는 1951년 독일 광산 공동결정법 도입을 시작으로 해서 19개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고 독일이나 스웨덴 등 14개국에서는 공공 부문은 물론이고 민간에까지 도입을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상태기 때문에 하루라도 시급하게 경제재정소위를 매일 열어서라도 이 법을 다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

만약에 이렇게 의도적인, 법안을 다루는 것이 지연된다고 한다면 위원장님께서 직권으로라도 상정해서 이 법안을 하루속히 처리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류성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위원장 윤후덕 류성결 간사님 의사진행발언 말씀 주십시오.

○류성결 위원 지금 경제재정소위원장인 본 위원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의도적으로’라는 표현을 몇 번을 하시는데요. 아주 무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적도 없을 뿐더러 경제재정소위에서 안건의 상정 원칙과 기준을 철저히 지켰고 거기에 따라서 아주 심도 있게 심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합니다.

○**박홍근 위원** 위원장님, 저 한 가지만 말씀……

○**위원장 윤후덕** 박홍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고 여당 간사 의사진행발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홍근 위원** 오늘은 종부세 관련해서 내용이 없어서 제가 정부한테 잠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그저께인가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종부세 관련해서 하셨던 발언 혹시 보셨습니까? 거기에 뭐라고 얘기를 하셨느냐 하면 ‘종부세 폭탄이 아무 잘못 없는 세입자나 일반 서민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부가 이것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전세를 반전세로 바꾸거나, 월세 가격을 더 올려서 세금을 내야겠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정말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은 주거의 현실이라든가 또는 지금 우리 조세 정책에 대한 아주 1도 이해가 없는 흑색선전에 불과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선거의 시기이긴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 이렇게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정치인들의 발언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보도자료를 내든지 언론에다가 해명을 해서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그 기사 보셨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저희가 특정 어떤 내용에 대해서 하는 것보다는 종부세 전체적으로 10문 10답 내지는 아주 많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여러 차례 내고 설명을 했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박홍근 위원** 방금 얘기한 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종부세 때문에 이렇게 세입자, 일반 서민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위원님, 종부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으로 본다면 굉장히 제한적이다라는 의미로 저희가 자료를 배포했고요.

임대료 수준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지 이렇게 임의로 일방적으로 부담이 전가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임대차 시장의 상황으로 봐서는 세 부담 전가는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저희가 이미 자료를 만들어서 언론에도 제공을 했고 그렇게 설명을 해 나가고 있고요.

실지로 시장에서도 이러한 종부세 부담이 세입

자에 전가되는 사례는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홍근 위원** 그러니까요. 조세로 전가되고 있다는 그런 근거도 없고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논리를 펴고 있는데 더구나 지금 임대료 상한제 때문에 인상률이 5%로 딱 제한돼 있기 때문에 주인 마음대로 올릴 수도 없고요. 그리고 실제 종부세를 내는 정도의 고가주택이면서 이런 문제로 지금 확인되는, 제가 국회예정처 자료도 한번 봤는데, 그런 실증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대다수 일반 국민 주거의 현실과는 무관하게 이렇게 버젓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지요.

더구나 너무 상식적이잖아요. 만약에 설사 그렇게 올린다고 해서 그러니까 전가된다고 해도 그러면 세입자는 다른 집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집주인도 또한 집이 비게 되면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집주인이 전세에서 월세로 만약에 바꾸는 것과 관련해서도 자금 없으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저는 이처럼, 길게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정치적 이익을 노리고 현실과 무관하고 또는 그것을 허위로 과장해서 국민 민심을 혼란으로 또는 불안으로 가중시키는 이런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는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지금 종부세 고지 때문에 흥흥한 말들을 많이 만들어 내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정보에 입각해서요. 그런 것을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최근에 종부세 고지와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사실과 다른 얘기들이 많이 보도가 되고 또 언론에 유통이 돼서요, 정부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종부세 부과,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요지로 여러 차례 보도자료와 또 설명자료를 제공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잘못된 뉴스가 돌지 않도록 정부가 조금 더 그러한 설명 노력을 더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홍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후덕** 김영진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위원님들이 주신 여러 가지 말씀을 잘 듣고요, 논의가 사실은 여야 간사 간 합의에 의해서 조세소위 안건, 경제재정소위 안건이 결정이 됐는데 마지막까지 다 논의되지 못한 사항이 좀 있는 것 같고요.

협의를 해서, 저는 경제재정소위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상황을 정확히 모르는 상황인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충분히 남겨져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논의를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여야 간에 조금 합의가 되면 관련한 중심 사안이나 소관 사안은 논의할 수 있도록 서로 의사일정 관련한 부분들과 안건 관련해서는 위원장님 주재하에 같이 협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문제이고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계속 늘이는 것보다는 집중해서 논의하고 정 소위에서 논의가 더 진행되지 않을 것 같으면 전체회의에 회부해서 논의하는 것도 국회법에서 허용하는 범위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서로가 그 안에서 논의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면 논의를 넓게 해서 합의를 만들어 가고 논의를 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도 같이 검토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윤후덕**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기국회가 아직 열흘 이상 남아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야 간에 더 논의할 법안들에 대해서 더 논의할 수 있게 간사님들 간에 협의를 더 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세소위는 240건을 다 심사를 완료했어요. 그런데 경제재정소위는 125건을 다루려고 했는데 75건까지밖에 못 다뤘지요? 그러면 75건 이후의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로서 또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여야 간사님들 남은 정기국회 기간 중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법안들이 꼭 논의될 수 있도록 협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반드시 관련 법안들이 심사되고 협의되고 합의되고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도 각별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류성걸 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후덕** 예, 말씀 주십시오.

○**류성걸 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제재정소위의 안건 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당초에 여야 간사 간 합의에 의해서 안건을 상정했고 또 전체 조세소위의 회의 횟수와 경제재정소위의 회의 횟수가 당초부터 횟수 자체가 달랐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논의할 사항 중에서 계류할 사항도 있고 또 의결한 사항도 있고 또 일부 합의한 사항도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되는 사항은 이제까지 소위의 관행과 또 소위에서 논의를 충분히 해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은 합의하도록 하고 또 계류할 사항은 계속해서 논의하는 그런 사항으로 앞으로 경제재정소위에서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될 수 있으면 안건은 많이 또 심도 있게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후덕** 남은 정기국회 기간에 더 소위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여야 간사 간에 합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홍남기 부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석 위원(19인)

고 용 진	김 수 홍	김 영 진	김 주 영
김 태 년	류 성 걸	박 형 수	박 홍 근
배 준 영	서 병 수	양 경 숙	양 향 자
용 혜 인	우 원 식	유 경 준	윤 후 덕
장 혜 영	정 성 호	정 일 영	

○청가 위원(4인)

서 일 준	이 인 영	전 해 철	정 운 천
-------	-------	-------	-------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정 연 호
전 문 위 원	정 명 호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기획재정부

부 총 리 겸 장 관

홍 남 기

제 1 차 관	이	억	원
제 2 차 관	안	도	결
차 관 보	한		훈
국 제 경 제 관 리 관	윤	태	식
기 획 조 정 실 장	이	종	욱
세 제 실 장	김	태	주
국 고 국 장	유	형	철
사 회 예 산 심 의 관	강	완	구